

2006. 6.

수 신 : 제천시의회회장

제 목 :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4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1. 발의의원 서명서 1부.

2.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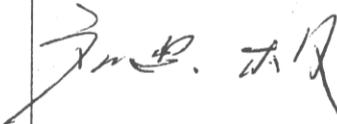
발의자 : 김성진의원 (인)



외 2인

(찬성자 서명 별첨)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김 성 권		
최 창 규		
유 경 상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79
------	------

발의연월일 : 2006. 6.

발 의 자 : 김성진의원의외 2인

1. 제안이유

2006년 1월 13일자로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제천시의회 의원의 정수가 당초 15명에서 13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 자치행정위원회 : 7명 → 6명으로 조정
 - 산업건설위원회 : 7명 → 6명으로 조정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0조
-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 붙임 1.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 1부.
4.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관련 조문 1부. 끝.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자치행정 위원회 7명” 을 “자치행정 위원회 6명”으로 한다.

제2조제3호중 “산업건설 위원회 7명” 을 “산업건설 위원회 6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회운영 위원회 6명 2. 자치행정 위원회 7명 3. 산업건설 위원회 7명 	<p>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현행과 같음) 2. 자치행정 위원회 6명 3. 산업건설 위원회 6명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6.1.11 법률 제7846호]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12.31>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개정 1991.12.31>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2.8 대통령령 제19322호]

제20조의2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가 13인이상인 의회로 하되, 그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1994.7.6, 1995.7.1, 1999.12.31>

[별표 9] <개정 1994.12.31>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제20조의2관련)

구	분	설치가능한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포함)의 수
의원정수 41인 이상		5개 이내
의원정수 31인 이상 40인 이하		4개 이내
의원정수 13인 이상 30인 이하		3개 이내

비고 : 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의회에 있어서는 당해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위 표에 의한 상임위원회외에 농어촌지역발전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자치법규 - 법규상세보기

●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	1991. 2. 17	조례 제1876호
개정	1995. 4. 28	조례 제2195호
	1998. 5. 6	조례 제2383호
	2002. 4. 13	조례 제2699호
	2003. 9. 30	조례 제2768호
전부개정	2006. 1. 13	조례 제2897호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회의 의원정수 및 시·군 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별표 1과 같이 한다.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28 조례 제2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 6 조례 제2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 13 조례 제2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30 조례 제2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 13 조례 제2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시·군의회의 의원 정수

구 분 시군별	의원정수			비 고
	계	비례대표 의원정수	지역구 의원정수	
계	131	17	114	
청 주 시	26	3	23	
충 주 시	19	2	17	
재 천 시	13	2	11	
청 원 군	12	2	10	
보 은 군	8	1	7	
옥 천 군	8	1	7	
영 동 군	8	1	7	
증 평 군	7	1	6	
진 천 군	7	1	6	
괴 산 군	8	1	7	
음 성 군	8	1	7	
단 양 군	7	1	6	